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최종공포일 : 2014.5.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2014.5.2 개정)

이 절차는 국내기업과의 효율적인 사업협력과 협력업체선정 및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분야 및 협력약정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선정, 협력약정 체결, 협력업체의 등록, 활용, 평가, 협력업체 관리 및 해지 등 협력업체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2013.6.28 개정)

- ① 이 절차상의 협력약정에 관한 규정은 본 절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국내기업과 체결한 협력약정을 대상으로 하며, 이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체결한 외부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약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해외공사에 관한 협력은 이 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협력업체의 운영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차에 따른다. 다만, 협력업체의 윤리행동강령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을 따른다.

제 3 조 (협력약정 부문 및 내용)

- ① 협력약정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기타 지원의 세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로 협력분야를 둔다.
- ② 협력약정은 협력부문별 특성에 따라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협력의 내용은 사업의 공동수행,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정보의 상호교류 등을 포함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2014.5.2 개정)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장"이란 본 절차를 운영관리하고 협력약정 및 사업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총괄부서장"이란 각 사업본부에서 해당 본부의 사업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다만, 기타지원 부문은 주관부서장이 겸한다.
3. "소관부서장"이란 전문분야별로 기술업무(사업관리 기술업무 포함) 또는 기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협력업체를 사업에 활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기타 지원 부문에 있어 회사가 필요로 하는 협력분야에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6. "협력분야"란 소관부서장이 담당업무 중 외주수행이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선정한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9.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사업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10.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11. "외부기술인력지원"이란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상 부족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협력업체직원을 우리 회사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12. "구매관리시스템(P-manager)"이란 회사의 계약(기성포함) 및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제 5 조 (관련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2014.5.2 개정)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전결권한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주관부서장: 본 절차의 운영관리, 협력업체운영 기본계획 수립, 협력분야 선정,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약정체결, 사업계약체결 등
2. 총괄부서장: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안전/환경요건 확보방안 총괄, 기술지도 총괄, 외부기술인력지원 총괄 등
3. 소관부서장: 소관분야의 협력업체 생산품 품질, 안전/환경요건 확보, 소관부서 협력분야 및 협력업체 추천, 신규 등록 및 재평가시의 수행능력평가, 정기평가, 기술지도 등
4. 사업부서장: 협력업체 및 외부기술인력 활용, 사업수행실적평가 등

제 2 장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제 6 조 (협력업체운영심의회 구성) (2013.6.28, 2014.5.2 개정)

- ①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협력업체 주관부서 본부장으로 한다.
 3. 당연직위원은 주관부서장, 경영기획담당부서장, 총괄부서장 및 품질안전환경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감사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 위원,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운영심의회를 소집, 주재 하고, 회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 운영심의회에 참석하여 안전에 대하여 공정, 성실하게 심의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행한다.

제 7 조 (불참 및 대리참석 조치)

운영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할 위원이 불참 또는 대리참석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출장, 휴가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운영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위원이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한다.
2. 제 1 호의 불참으로 인해 대리참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위원이 대리참석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심의사항) (2013.6.28, 2014.5.2 개정)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분야 조정
2.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조정
3. 협력업체 선정, 해지, 제재처분
4. 협력업체 해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5. 재평가 및 실사 대상업체 선정
6. 설계결과물 품질 제고방안
7. 정기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약정 유지 업체, 우수협력업체 선정
8. (삭 제)
9.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사항
10. 기타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9 조 (소집 및 심의)

- ① 운영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운영심의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건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또는 등록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운영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 (결과조치)

- ① 운영심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② 운영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협력업체 운영업무에 반영하여 관련부서의 협조 및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협력분야 선정

제 11 조 (협력분야의 선정) (2014.5.2 개정)

- ① 각 소관부서장은 소관 협력분야의 조정(신설/폐지/통합 등) 필요시 분야 신설 사유,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 등의 운영심의회 부의 안건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다만, 개최시기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분야를 선정한다. 협력분야를 선정할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로 유사 기능 및 역무를 통합하되 회사의 기능별 업무가 포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발주할 때 계약규정 등에서 정하는 지명경쟁요건이 확보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선정한다.

1. 사업부서장의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외주수행이 필요한 분야
 2. 소관부서장의 사업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외주수행이 필요한 분야
 3. 향후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계획에 따라 외주수행의 필요가 예상되는 분야
 4. 기타 사업개발과 기술협조 및 사업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
- ④ 각 부문별 협력분야, 협력분야별 자격요건 및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 12 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 (2014.5.2 개정)

① 협력분야별 등록업체는 분야별로 5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력분야별로 등록업체 수를 5개 미만으로 둘 수 있다.

1. 연간 발주 예상사업의 규모 및 빈도가 과소한 경우
2. 제18조에 의하여 평가된 등록적격업체 중 규모, 능력 등에서 변별력이 크지 않은 업체 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3. 협력업체 등록 적격업체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4. 협력업체 등록 평가점수, 우선순위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운영심의회에서 협력분야별 업체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는 경우 제18조에 의거 평가된 적격업체 전체의 평가내역을 첨부하고 등록여부 사유를 명확히하여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업체 수는 소관부서장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각 기술 부문의 분야별 업체 수를 각 전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조정하고, 주관부서장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회사 전체의 등록업체수를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규등록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13 조 (협력분야별 중복등록)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의 협력분야에 중복하여 등록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당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을 등록할 때 동일인을 중복하여 다른 협력분야에 등록되게 할 수 없다.

제 4 장 협력업체 선정

제 14 조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절차) (2014.5.2 개정)

- ①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은 상시 공고에 따른 수시등록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장이 등록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수시등록 방법에 대한 협력업체선정기준 및 모집절차에 관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년중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력업체의 기본자격요건) (2013.6.28, 2014.5.2 개정)

- ① 협력업체는 수시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될 것, 다만, 기타 지원부문은 제외한다.
2. 금융감독원지정 외부 적격신용평가기관 또는 국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BB급 이상일 것
3. 해당 협력분야별로 요구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할 것
4.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6. 우리회사 퇴직 임.직원 중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7. 제27조 제6항에 의거 회사의 협력약정 해지에 의한 재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 ②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사업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 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부서 본부장의 협력업체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6 조 (협력업체 등록평가기준)

- ① 협력업체 등록평가는 기업의 경영상태, 수행능력 등에 대해 일정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로 환산함으로써 협력업체 등록 요건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상 업체의 경영상태의 안정성 여부
 2. 해당 협력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품질요건의 구비 여부
 3. 해당 협력분야와 기술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의 수행경험(이행실적) 또는 시공능력
 4. 과거 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그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5. 기타 적정 협력업체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 17 조 (등록평가 부서장과 평가자의 자격요건) (2014.5.2 개정)

- ① 평가항목별 평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보유상태 및 사업수행실적(시공능력) 평가 : 소관부서장 평가
 2.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평가 : 품질안전환경부서장
 3. 경영상태 등 평가 : 주관부서장
- ② 제1항의 각 호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부서장이 지정한다.
 1. 각 부서장은 평가자에서 제외한다.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3.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항목의 평가자의 수는 평가항목별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8 조 (등록평가의 방법) (2014.5.2 개정)

- ① 등록평가는 제15조에 따른 1차 평가와 제16조에 따른 2차 평가로 구분하며, 기본자격요건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1차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2차 평가를 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본부장의 협력업체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1차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2차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 평가시 경영상태 신용도 점수는 최저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② 1차 평가는 주관부서장이 수행하며, 2차 평가는 제17조에 따른 평가부서장이 수행한다.
- ③ 각 평가자는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를 수행한다. 제출서류의 허위기재가 고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후의 심사과정을 생략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서류의 허위기재가 단순 착오이거나 누락인 경우에는 추가 보완을 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④ 평가는 제3조 제1항에 의거한 부문 업체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행하며, 각 항목별 평가의 점수는 절대평가로써 산정한다. 다만, 계량평가를 제외한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자들이 평가한 점수를 단순평균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⑤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 ⑥ 주관부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력업체의 선정) (2014.5.2 개정)

- ① 소관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결과 경영상태, 수행능력의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설계엔지니어링, 전문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품질, 안전/환경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협력업체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기준에 미달된 업체라도 사업개발, 기술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협력업체 선정(안)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협력업체 선정(안)의 협력분야별 등록업체 수는 제12조에 따르며, 등록적격업체를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열거하여 협력업체 선정(안)을 작성한다. 다만, 등록적격업체 중 회사의 기술 및 영업보호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점수 순위에 관계없이 협력업체 선정(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제12조에 따라 협력분야별로 등록업체 수를 제한한 경우, 평가점수가 동점인 업체로 인하여 동 분야에 제한된 수가 초과되면 인력상태, 품질, 안전/환경 활동능력, 신용도, 사업수행실적 순으로 각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전 항목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 ④ 소관부서장은 최종 협력업체를 추천할 때 등록적격업체는 물론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가 포함된 선정(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 ⑤ 주관부서장은 해당 내용 검토 후에,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 ⑥ 주관부서장은 선정 여부가 결정된 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모든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게는 통보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⑦ 등록신청을 하여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통보 받은 부적격 선정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재등록신청이 제한된다.

제 5 장 협력약정 체결 및 등록

제 20 조 (협력약정체결, 등록 및 유효기간) (2014.5.2 개정)

-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표준협력약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 체결 사실을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구매관리시스템(P-manager)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협력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약정의 유효기간은 협력약정체결일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가 통보 받은 해지일로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 ④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협력업체는 만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등록 평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자격 갱신 심사를 적용하되 15조의 기본자격요건 평가는 제외한다.
- ⑤ 협력약정 갱신 심사 후 회사는 신규 등록시의 결과 통보 절차를 준용하여 그 결과를 모든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협력업체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일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 ⑦ 제26조의 3에 의해 재평가시행을 하는 경우 업체가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27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업체가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한다. 이후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이 재개된다.

제 21 조 (협력업체 현황관리 및 비밀유지) (2014.5.2 개정)

-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분야 및 협력업체 현황을 회사 관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협력약정체결에 관련된 직원은 본 절차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력약정의 체결과 관리과정에서 취득한 협력업체, 협력약정 미체결업체의 기술 및 경영정보사항을 회사 내외의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장, 총괄부서장, 소관부서장, 사업부서장은 협력업체가 회사와의 제반협력관계에서 지득한 회사의 제반 기밀사항이 내외부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밀유출사항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력업체 활용

제 22 조 (활용의 원칙)

- ① 협력업체의 활용은 협력약정서, 계약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 ② 회사사업의 발주는 해당 협력분야에 등록된 협력업체의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역무의 특성상 협력약정관계의 회사가 없는 경우
 2. 경쟁의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할 경우 해당분야의 협력업체로는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지정 경쟁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분야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발주사업의 내용이 협력약정분야는 아니지만 협력업체 중 업무수행의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 동 업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④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경쟁입찰 하는 경우 협력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업체로서 확보해야하는 별도의 의무와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사업수행과정에서도 해당사업에 한해서 협력업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면제된다.

제 23 조 (협력업체의 인력활용) (2014.5.2 개정)

- ① 회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을 외부기술인력지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장은 매년도 회사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외부기술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파법"이라 한다)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보유한 협력업체와 외부기술인력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
- ③ 사업부서장은 외부기술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 협조를 득한 후 외부기술인력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해당 사업부서에 투입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장이 제3항에 의하여 외부기술인력을 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파법에서 정하는 활용가능업무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기술인력 자격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투입예정 인력의 자격평가를 하여 적격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투입된 외부기술인력의 활용, 관리, 감독의 책임은 사업부서장에게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외부기술인력이 근파법에서 정한 활용가능기간과 활용가능업무의 범위내에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부서장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투입인력에 대한 외부기술인력 파견지시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외부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 (2014.5.2 개정)

- ① 설계엔지니어링분야 및 전문건설공사분야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을 포함한 관련 경력수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외부기술인력이 사업 발주처의 인력지원에 투입되는 경우 또는 수주 사업계약조건에 외부기술인력에 대해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수주사업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근로자파견계약에 의거하여 투입된 외부기술인력의 당초 투입시점에 확정된 등급은 해당 외부기술인력의 파견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7 장 협력업체 평가

제 25 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2014.5.2 개정)

- ①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기타 지원부문 포함, 이하 '사업'이라 칭함)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 납품, 검수, 대가지불, 계약 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사업수행실적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 당해년도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익년도 초 평가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과 계약서에 의거 사업의 중간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상 당해년도 종료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평가로 본 평가를 갈음한다.
3. 사업부서장은 해당 발주사업을 감독하는 직원 중 부서장을 제외한 직위자 2인 이상을 평가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위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 등 비직위자를 포함하여 평가자를 선임 할 수 있다.
4. 각 발주사업별 평가점수는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2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및 재평가) (2014.5.2 개정)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및 재평가는 협력업체가 협력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자격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구비하여 사업수행 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협력업체 제도의 당초 취지를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6 조의 2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2014.5.2 신설)

- ① 협력업체의 정기평가는 협력약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협력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접수된 사업수행실적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기평가표(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거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업체 평가는 협력분야별로 분리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평가점수는 개별사업 평가결과의 가중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이때 가중치는 해당 연도 사업기성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정치로 하며 확정되는 시점에서 그 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기성금액으로 평가된 점수를 PQ 심사 등에 활용해야하는 경우, 그 점수는 유효하며 확정 이후 수정된 점수로 재평가되지 아니한다.
- ③ 정기평가는 협력업체들 중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의안건을 협력업체운영심의회 부의안(별지 제 8 호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청한다.
 1. 평가대상 업체들의 정기평가 결과 및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의 기본자격요건 지속 여부
 2. 포상 업체 추천 :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가. 최근 5 년 이내에 회사로부터의 부정당업체 제재 이력이 없을 것
 - 나. 정기평가 대상 당해년도 해당 협력분야 1 건이상 계약 실적 보유
 다.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 분야별 상위 10% 이내(다만, 정기평가 대상 중 품질부서의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및 정기평가 평가대상 당해 사업수행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는 우수 협력업체 추천 제외)
 라. 소관부서장의 추천
 3. 해지 업체 추천 :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 기준점수 70 점 미만이면서 분야별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 나. 당사가 발주하는 입찰건(지명경쟁)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는 업체(정기평가 평가대상 당해 년도 한정)
 - 다. 기타 소관부서장이 협력업체와 사업개발 또는 사업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협력관계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업체

④ 제 3 항 제 3 호에 의거 해지 추천된 업체의 경우라도 다음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지업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사가 발주하는 입찰건에 1 회 이상 참가하며, 참가시마다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을 만족한 경우(정기평가 평가 대상 당해년도 한정)

2. 소관부서장이 해당그룹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소관부서장은 협력업체들 중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2 회 유예할 수 있으나, 3 회차 정기평가시에도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는 해지업체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해지업체 추천 대상 제외는 제 4 항을 따른다.

⑥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이 작성한 부의 안전에 대해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포상 및 해지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 26 조의 3 (협력업체의 재평가) (2014.5.2 신설)

① 협력업체의 재평가는 협력약정 기간 동안 협력업체가 협력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자격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부문 업체평가표(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거 평가한다.

② 재평가는 관련 부서장이 요청 하거나 협력업체의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항 발생으로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등록업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공동조사로써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요구부서에서 안전을 작성하여 운영심의회에서 재평가 필요업체로 선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재평가의 방법과 기준은 신규 등록 평가의 방법과 기준을 준용한다.

④ 요구부서장은 재평가 시행 결과를 부의(안)으로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운영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주관부서장은 해당 내용 검토 후 운영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의 유지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재평가 결과 적격 업체 : 업체가 통보 받은 약정 재개 지정일로부터 협력약정 효력 재개
2. 재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 협력약정이 해지되며 그 절차는 제 27 조를 따른다.

제 8 장 협력업체의 관리

제 27 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2013.6.28, 2014.5.2 개정)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1호, 2호, 16호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부서장, 소관부서장, 사업부서장은 주관부서장과 함께 소관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 확인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폐업의 경우는 제외)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회사에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중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삭 제)
 10.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 제한 1년
 11. (삭 제)
 12.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3.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14.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재등록제한 2년
 15.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에서 2년
 16. 약정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7. 제26조의 2에 의거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8.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5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삭 제)
- ④ 해지의 사유가 특정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할 수 있다.
- ⑤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정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업체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제재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제1항에서 규정한 재등록 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심의회에 회부, 심의하여 협력약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력업체에 협력약정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5항에 따른다.
- ⑧ 협력약정이 해지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그 사실을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협력약정의 정지, 해지, 재평가 및 신규 등록신청 부적격에 따른 통보시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협력약정 해지 후 조치사항) (2014.5.2 개정)

주관부서장은 협력약정이 해지된 업체의 협력약정 해지사유 및 해지일을 구매관리시스템(P-manager)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9 조 (기술지도 및 육성)

- ① 총괄부서장은 협력업체 및 외부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소관 협력분야에 등록된 협력업체 및 외부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총괄부서장 및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지도 및 육성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수립, 시행
 2. 교육참여 및 자료이용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규모, 거래실적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 금지
 3. 사업참여 기회 부여 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 부여

제 30 조 (우수협력업체 선정 및 포상 등) (2014.5.2 개정)

- ①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협력업체 정기평가가 완료된 후 사업본부별 추천과 운영심의회 심의에 따라 협력업체 중 협력실적 등이 양호한 우수협력업체 또는 개인(인력지원의 경우)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우수협력업체는 소관부서장이 분야별로 추천한 우수협력업체 중 정기평가 점수가 모든 분야의 업체들 가운데 상위 10% 이내에서 선정한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개발,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당사에 기여했다고 소관부서 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협력업체로 포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심사점수 가산, 계약보증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산점수는 해당 협력분야에서만 적용한다.
- ⑤ 우수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제4항의 혜택은 선정된 시점 이후 일년간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제 30 조의 2 (부적격업체의 선정 및 제재) (2014.5.2 신설)

- ① 주관부서장은 제 26 조의 2 에서 규정한 협력업체 정기평가가 완료된 후 소관부서장이 해지로 추천한 부적격업체에 대해서 운영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지 및 감점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감점 적용시 그 기준은 제 30 조 제 4 항과 제 5 항에서 정한 방법 및 기간을 준용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절차는 198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1988년도 제15차 경영회의(1988. 12. 13)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업체는 이 절차에 의거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절차는 199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2. 2)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3. 25)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1. 10)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5. 20)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9. 13)

- 1.(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신고 또는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존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분야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이 절차 개정후 1월 이내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3.(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대상의 종합건설부문에 체결한 협력업체의 협약은 제2대상 건설부문의 협약 전문분야중 신고한 분야에 한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제2대상의 종합환경부문에 체결한 협력업체의 협약은 환경부문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한 경우에 한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절차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27)

- 1.(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17조 제3항, 제4항은 외부기술인력 수급업무가 사업책임자에서 기술부서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직제규정시행세칙 제5조(분장업무)가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이전에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부 칙 (1995. 2.20)

이 절차는 1995. 1.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절차는 1996. 8. 22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이전에 협약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만료일까지 제12조 및 제15조 1항의 개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절차는 1996. 10. 16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9년까지 협력업체 전문화 및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3.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절차의 시행과 동시에 기술자 등급 및 자격사정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절차는 1998.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절차는 1998. 4.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절차는 1999.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절차는 1999.6.17부터 시행한다.
- 2.(서식의 폐지) 이 절차의 시행과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은 폐지하고 현행 제6호 서식(협력업체 추천서)을 제5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절차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절차는 2003. 6.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절차는 2003. 12. 31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절차는 시행일부터 공포일(2004. 3. 11) 현재까지 완료된 사항 혹은 결재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부 칙(2005. 4. 1)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29)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8)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8)

- 1.(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절차시행일 현재 결재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2006. 11. 29)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현재 결재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2007. 9. 18)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5)

1. (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① 제6조 제3항의 협력분야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활용은 본 개정절차에 의거 협력업체 신규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정전 절차에 따른다.
② 본 개정절차에 의거 협력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개정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하며, 제18조 제7항의 개정사항은 본 개정절차 시행이후에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에 의한 협력업체 등록 및 제25조에 의한 우수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20조에 따른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의 적용은 본 개정절차 시행 후 최초 업체별 평가가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④개정 전 절차에 따라 등록된 협력업체의 현행 협약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협력업체 정기등록은 본 개정절차 시행 후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이 절차는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4)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4)

이 절차는 2009. 12.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6)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22)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9)

- 1.(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 이전에 협력업체 신청 평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부 칙(2011. 4. 14)

이 절차는 2011. 5.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9)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28)

- 1.(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별표2 I~Ⅲ의 각 2.나.①의 경우에는 우리회사의 시스템과 신용정보 업자의 신용조회시스템이 연계되는 날까지 종전의 절차에 의한다.

부 칙(2011. 8. 9)

이 절차는 2011. 8.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9)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28)

이 절차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

- 1.(시행일) 이 절차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이전에 협약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만료일까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